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89호) 공포 알림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89호)이 아래와 같이 공포(2023. 6. 2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주요 개정 내용	비고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해구제급여 사망일시보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지급기준 규정</li><li>■ 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기준 명확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포한 날부터 시행('23.6.29.)</li><li>■ 사망일시보상금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망부터 적용</li></ul>

2. 아울러, 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2023. 6. 29.자 관보, 우리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89호) 1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원장, 사단법인 해피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와이더블유씨에이연합회장, 한국소비자교육원장, 소비자시민모임장, 한국부인회총본부장, 대한어머니회중앙회장, 소비자와함께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주무관 **이여름** 의약품안전평 전결 2023. 6. 29.  
가과장 직무대리 **이인선**

협조자

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4617 (2023. 6. 29.)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www.mfds.go.kr](http://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719 팩스번호 043-719-2700 / [summer0808@korea.kr](mailto:summer0808@korea.kr) / 대국민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